

제213회 임시회
2003. 5. 22(목)

검 토 보 고 서



관광건설위원회
전문위원

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5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5월 7일

3. 제안이유

-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이 2003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
- 관계 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2조)
- 지역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신설할 수 있는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3조, 제4조)
-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방법, 임원, 임기,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5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을 검토한바
-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
- 새로운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